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8년 1월 21 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1월 21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한상천 외 1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8년 1월 20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중에서 가결된 안건 중 하나인,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p> <p>기간제교사노조가 2017년 11월 20일 부터 12월 12일 까지 전국 기간제교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900명 중 305명이 기간제교원이 꼽는 차별 중 하나로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을 꼽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과 고충을 해소할 법적 근거 및 공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있는 ‘고충처리’ 조항을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p> <p>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제 32조 (기간제교원)</p> <p>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2018년 1월 현재, 기간제교원의 수가 2013년 4만2천470명에서 2017년 4만7천633명으로 4년 만에 5천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 있는 기간제교원은 정규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2017년 11월 20일 부터 12월 12일 까지 전국 기간제교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900명 중 305명이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을 기간제교원이 겪는 가장 큰 차별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기간제교원은 매일 9시까지 야근을 하며 8~9년 동안 계속 과중한 업무만 하다 보니, 가정생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간제교원이 행정적 업무의 과중으로 고충이나 가족문제, 차별을 겪고 있는데도, 이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간제교원의 체력이 저하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기간제교원의 고충처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간제교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과 정규직교원의 지위를 보다 동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주요골자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신설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한다.

<중략>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한다.

<중략>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